

# 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

식품의약품 안전청

지난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배포된 「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」의 내용 중 동물용 마약류약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, 임상회원 여러분께서는 마약류약품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지도·점검

### ■ 추진 일정

- 정기감시
  - 업소별 년 1회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각 시·도에서 매년초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·군·구와 합동(교차) 지도·점검 실시
- 수시감시
  - 진정·정보사항 등 접수 시
  -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, 식약청장의 지시 등 필요시 수행

### ■ 감시 대상업소

- 관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(치과 의사, 한의

사, 수의사 포함), 마약류 소매업자, 마약류 도매업자

### ■ 감시방법

-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사전에 피감 시자에게 감시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, 당해 업소의 대표자,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.

### ■ 감시사항

- 마약류취급의료업자, 마약류 도매업자, 소매업자, 관리자
  - 시설 및 기구의 적부
  - 마약류취급 규정(사용·조제·투약·운반·관리·수수 등) 준수상태
  -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·지정 규정 준수상태
  - 마약류의 양도·양수 규정 준수상태
  -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
  - 사고마약류 처리 규정 준수상태
  - 마약류의 저장 규정 준수상태
  -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
  - 마약류 투약의 기록 규정 준수상태

-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 규정 준수 상태
- 마약류 기록의 정비 등 규정 준수상태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
- 기타 마약류 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

상 교육기회 부여)

• 행정사항

- 마약류도매·소매업자,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교육은 대한약사회·대한의사회·대한수의사회 등 각 단체별 보수(연수)교육 시간을 적극 활용
- 관내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년 1회 실시하고, 전입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수료자가 없도록 조치

**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**

**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**

- 시행기관 : 시·도
- 추진일정 :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
- 교육대상 : 관리 마약류도매·소매업자, 마약류취급의료업자, 마약류 관리자 등
- 교육과정
  - 교육내용
    - 마약류 저장·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
    -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    - 마약류 취급관련 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
  - 교육 횟수 및 시간
    - 매년 1회이상 실시, 1회 2시간(년 2회 이

**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**

**동물용 마약류 지도·점검**

- 주관기관 : 식약청(마약관리팀)
  - 협조기관 : 각 지방청, 시·도(시·군·구)
- 추진일정 : 2007년 8월~9월
- 감시대상 :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, 도매·소매업소
- 중점 감시사항
  -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관리 적정여부
  - 마약류 취급규정(사용·조제·투약·운반·관리·수수 등) 준수 여부 등 

